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5. 1 선고 2013가합511287 판결 [주식매매대금 청구의 소(일부청구)]

재판경과

서울고등법원 2015. 1. 15 선고 2014나2017297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5. 1 선고 2013가합511287 판결

전문

원고주식회사 A

피고주식회사 B

변론종결 2014. 3. 24.

판결 선고 2014. 5. 1.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4.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C(2013. 3. 27. 원고로 상호가 변경되었다, 이하 원고라 한다)는 2006. 7. 4. 주식회사 D(2011. 5. 9. 피고로 상호가 변경되었다, 이하 피고라 한다)과, 주식회사 E저축은행(이하 'E저축은행'이라 한다)이 발행한 보통주식 33,00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대금 10억 원에 양도하기로 하는 주식양도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주식양도대금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2006. 7. 3. 원고에게 액면금액 10억 원, 지급기일 2006. 12. 31.로 된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주었고, 2006. 12. 26.에는 원고에게 액면금액 10억 원, 지급기일 2008. 12. 31.로 된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주었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채권자가 기존 채무의 지급을 위하여 그 채무의 변제기보다 후의 일자가 만기로 된 어음의 교부를 받은 때에는 묵시적으로 기존 채무의 지급을 유예하는 의사가 있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므로 기존 채무의 변제기는 어음에 기재된 만기일로 변경된다고 볼 것이다(대법원 1999. 8. 24. 선고 99다24508 판결, 대법원 2001. 2. 13. 선고 2000다5961 판결 참조).

위 인정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주식 양도대금채권의 변제기는 위 채권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발행한 2006. 12. 26.자 약속어음에 기재된 지급기일인 2008. 12. 31.이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주식 양도대금 10억 원 중 원고가 구하는 2억 원 및 이에 대하여 그 변제기 다음날인 2009. 1. 1.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 다음 날인 2013. 4.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통정허위표시 주장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의 대표이사이자 대주주이었던 F는 2006. 7.경 E저축은행의 대주주인 원고가 발행한 주식을 담보로 E저축은행으로부터 24억 원을 대출받는 과정에서 상호저축은행법상 대주주 신용공여금지 규정의 적용을 피하기 위하여 피고와, 원고 소유의 이 사건 주식을 피고에게 양도한 것으로 가장하기로 합의하고, 원고를 대표하여 이 사건 계약서를 작성한 것이므로, 이 사건 계약은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와 피고가 통모하여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이 사건 계약의 합의해지 주장 또한 피고는, 원고는 2009. 12. 30.경 주식회사 센츨리온이십일과 이 사건 계약과 동일한 내용으로 주식 양도계약을 체결하였고, 이로써 피고와 체결한 이 사건 계약을 합의해지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가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계약이 합의해지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시효소멸 주장 또한 피고는,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주식 양도대금채권은 상행위로 인한 채권으로 5년의 상사소멸시효가 적용되고, 그 변제기는 이 사건 계약 체결일인 2006. 7. 4.이며, 이 사건 소는 그로부터 5년이 경과한 후에 제기되었으므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주식 양도대금 지급채무는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와 피고는 모두 주식회사로서 상인이고(상법 제5조 참조), 상인의 행위는 보조적 상행위로 추정되므로(상법 제47조 참조), 이 사건 주식 양도대금채권은 상행위로 인한 채권으로 5년의 상사소멸시효가 적용된다고 할 것이나, 위 채권의 변제기가 2008. 12. 31.임은 앞에서 본 바와 같고, 이 사건 소는 그로부터 5년이 경과하기 전인 2013. 3. 22.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이정호

판사손태원

판사유선우